

노동조합 기초교육

KT 새노조와 함께하는 노동자 권리 가이드

공공운수노조 KT 지부 (KT 새노조)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01

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

02

노동조합 운영원칙과
체계

03

노동법과 노동 3 권

04

부당노동행위

05

KT 새노조 소개와 활동

06

공공운수노조 소개

07

민주노총 vs 한국노총

08

1 노조 탈퇴 · 구조조정
합의

09

조합원 기본 행동강령

01

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

노동조합의 정의 · 필요성 · 역할

01 노동조합이란 ?

"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"

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(노조법) 제 2 조

① 평등한 공동체

학력 · 나이 · 성별 · 직종 무관 ,
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. 1 인 1
표 원칙으로 동등하게 의사결정 참여

② 단결된 힘

개별 노동자는 사용자에 종속 .
집단으로 뭉쳐야 대등한 관계 형성 가능 .
산별노조로 더 크게 뭉쳐야

③ 사회적 목소리

8 시간 노동 · 주 5 일제 · 최저임금 ·
중대재해처벌법 모두 노동조합이
투쟁으로 만들어 낸 성과

02

노동조합 운영원칙과 체계

어떻게 함께 결정하고 운영하는가

02 노동조합 운영원칙과 운영체계

운영원칙

자주성	자본 · 권력으로부터 독립, 조합원의 힘으로 운영
민주성	조합원 참여 보장, 투명한 토론과 1인 1표 결정
투쟁	탄압에 맞서 권리 쟁취를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
연대	다른 노동자 · 시민과 연대하여 사회를 바꾸나감

운영체계

의결기구

총회 (최고 의결기구) → 대의원회
규약 제 · 개정, 예산 · 결산, 임원 선출 등 결정

집행기구

집행위원회 + 각 부서 · 위원회
총회 · 대의원회 결정사항을 실제 사업으로 집행

감사기구

회계감사위원회 (집행부로부터 독립)
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견제 장치

03

노동법과 노동 3 권

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

03 노동 3 권 — 헌법 제 33 조

헌법 제33 조: "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·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"

① 단결권

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

조합원이 2명 이상이면 노조 결성 가능

산별노조 (공공운수노조) 에 직접 가입도 가능

② 단체교섭권

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

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

합의 내용 = 단체협약 (취업규칙보다 상위 효력)

③ 단체행동권

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

파업 · 태업 · 피켓팅 · 집회 등이 포함됨

노조법이 정한 절차 준수 시 정당한 권리 행사

03 노동법의 종류

'노동법'이라는 단일한 법은 없다 — 노동 관련 여러 법률을 통칭하는 개념.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

일할 권리를 지키는 법

- **근로기준법**
근로시간 · 휴가 · 해고 등 최소 기준
- **최저임금법**
임금의 최저 수준 법으로 보장
- **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**
노동 3 권 행사 절차를 정한 법

건강 · 안전을 지키는 법

- **산업안전보건법**
안전한 작업환경 의무화
- **산업재해보상보험법**
업무상 재해 치료비 · 생활비 보장
- **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**
근로기준법 내 신설 (2019)
- **중대재해처벌법**
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 처벌

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지키는 법

- **남녀고용평등법**
성별 · 임신 · 출산 차별 금지
- **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**
나이 차별 금지
- **장애인고용촉진법**
장애인 고용 의무 · 재활 지원
- **기간제 · 단시간 / 파견근로자 보호법**
비정규직 차별 처우 금지

04

부당노동행위

알아야 막을 수 있다 — 법으로 금지된 사용자의 행위

04 부당노동행위 4 가지 유형

불이익 취급

- × 노조 가입 · 활동을 이유로
해고 · 징계 · 한직 발령 · 승진 배제 등
불이익 처우

반조합계약

- × 노조 가입 · 활동 권리를
계약으로 막거나 탈퇴를
고용조건으로 거는 행위

단체교섭 거부

- × 정당한 이유 없이
교섭을 거부 · 지연하거나
불성실하게 임하는 행위

지배 · 개입

- × 노조 운영에 개입 · 간섭하거나
어용노조를 지원하고
탈퇴를 종용하는 행위

⚠ 부당노동행위는 「노조법」 제 81 조에 명시된 명백한 위법 행위 — 노동 3 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

04 부당노동행위 주요 사례

" 이런 것도 부당노동행위?" —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명백한 위법 사례

× 불이익 취급

노조 활동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" 업무 태도 불량 " 을 이유로 경고 · 징계 → 다른 명목을 내세워도 실질이 노조 활동 보복이면 위법

× 차별

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한직 발령 · 승진 배제 · 상여금 차별 · 계약 미갱신 → 똑같이 일해도 조합원이라서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

× 신고 보복

노동위원회에 신고 · 증언한 직원이 속한 부서 전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 → 범위를 넓혔다고 면책되지 않음

× 교섭 거부

" 경영이 어렵다 " 며 몇 달째 교섭 일정을 잡지 않음 → 경영 위기는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

× 교섭 해태

교섭에서 합의해 놓고 " 법무팀 검토 " 를 핑계로 단체협약 서명을 장기 지연 → 협약 체결 회피도 교섭 해태

× 지배 · 개입

관리자가 조합원을 개별 면담해 " 노조 나가는 게 장래에 좋다 " 며 탈퇴 종용 / 어용노조는 지원하고 독립노조는 탄압

04 부당노동행위 , 이렇게 대응합니다

1

혼자 판단하지 말고 노동조합과 함께

부당노동행위는 개인이 아닌 노조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시도 . 혼자 끄끄 앓지 말고 먼저 노동조합에 연락하자 .

2

사측 연락 시 즉답 · 서명 보류

면담 요청 · 징계 통보 · 인사 조치 연락이 오면 즉시 조합에 알리고 , " 노동조합과 상의 후 답변하겠다 " 고 유보한다 .

3

증거를 확보하라

대화 · 면담 · 지시 상황은 본인이 당사자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 가능 . 문자 · 이메일 · 메신저 기록 보관 , 직후 메모 .

4

법률적 대응 — 전문가 지원

공공운수노조 · 민주노총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.

" 나만의 문제" 로 두지 않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. 노동조합과 함께라면 더 안전하게, 더 당당하게.

05

KT 새노조 소개와 활동

2011 년 설립 — 인간다운 KT 를 만드는 사람들

05 KT 새노조는 어떤 노조인가

설립

2011 년 7 월 — 복수노조 제도 시행과 함께 결성

성격

KT 복수노조 (제 2 노조), 독립 민주노조

상급단체

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(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)

정체성

통신공공성을 지향하는 통신노동자 조직
건전경영을 감시하는 내부자
노동인권 · 차별에 맞선 연대자

공식 홈

humankt.org

설립 배경

2002 년 완전 어용화된 1 노조의 한계 속에 , 소수라도 독립 민주노조로 노동인권 · 경영비리 · 통신공공성에 정면 대응하자는 문제의식으로 결성 .

3 대 활동 노선

- **경영감시**
통신공공성 위한 경영비리 감시 · 고발
- **생활투쟁**
노동인권 · 정시퇴근 · 자폭영업 근절
- **사회연대**
통신 비정규직 조직화 · 연대

05 KT 새노조 주요 활동 (2011~2026)

설립부터 지금까지 — 경영감시 · 노동인권 · 사회연대의 기록

2011	창립 · 생활전선 투쟁 시작 정시퇴근 · 불필요 상품 안 팔기 / 부진인력퇴출 폭로	2011~12	제주 7 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공익제보 이해관 위원장 보복해고 → 법원 승소 · 위자료
2013	이석채 회장 퇴진 투쟁 무궁화 3 호 위성 불법매각 등 비리 폭로 · 고발	2014	황창규 8,300 여명 명퇴 규탄 업무지원단 (CFT) 해체투쟁 · 직장내괴롭힘 백서
2015~18	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연대 손말이음센터 · 스카이라이프 해고자 정규직 복직	2018	김성태 딸 채용비리 · 아현화재 황창규 비자금 고발 / 통신공공성 투쟁
2021	전국 통신대란 책임 규명 성명 인터넷 속도저하 · 구현모 경영진 책임 촉구	2024~26	구조조정 반대 · 지배구조 개혁 김영섭 구조조정 반대 · 직원 사망 진상규명

06

공공운수노조 소개

21 만 조합원 — 공공부문 최대 산별노조

0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(공공운수노조)

2011 년 6 월 24 일 창립 | 민주노총 산하 | 조합원 21 만 명 | 공공부문 최대 산별노조

조직 체계

민주노총 (ITUC 회원 — 163 개국 2 억 7 백만 명)



공공운수노조 (산별노조)



본부 / 지부 / 지회



KT 새노조 (KT 지부)

가입 대상

공공 · 운수 ·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
정규직 · 비정규직 · 해고자 · 퇴직자 모두 가입 가능

핵심 지향

노동기본권 쟁취 | 공공성 강화
비정규직 철폐 | 차별 없는 사회
정규직 · 비정규직 함께하는 강한 산별노조

07

민주노총 vs 한국노총

한국 노동운동의 양대 축, 어떻게 다른가?

07 민주노총 vs 한국노총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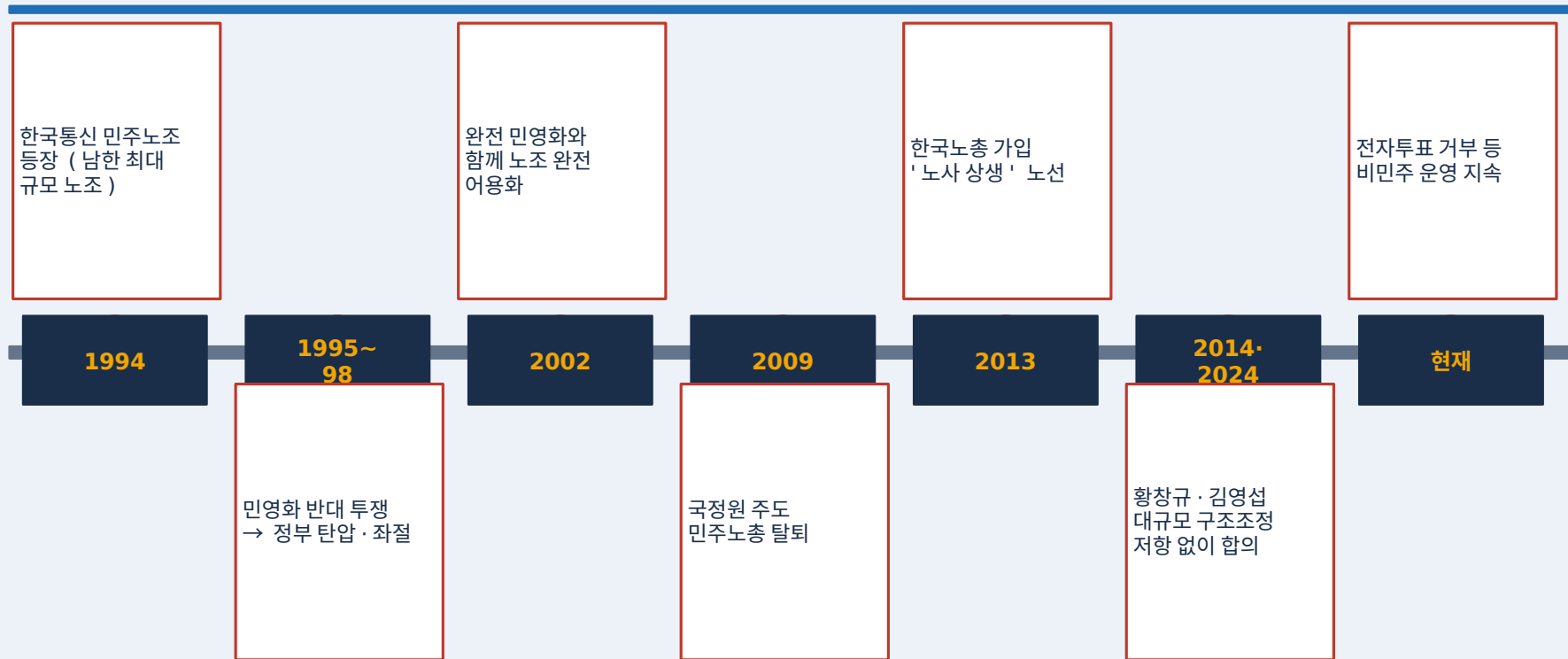
	민주노총	한국노총
설립	1995 년 11 월 11 일	1961 년 (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계승)
노선	계급투쟁 —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 추구	온건 개량주의 — 정부 · 기업과 협력적 관계 중시
정치성향	진보 정치세력과 연대 사회 변혁 지향	정치적 중립 표방 실질적으로는 보수 성향
핵심이슈	노동법 개정 · 비정규직 · 사회보장 확대에 강경 입장	조합원 실리 중심 협상 타결 우선
KT 노조	KT 새노조 (공공운수노조)	KT 노동조합 (IT 사무서비스노련)

08

1 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대규모 구조조정 연속 합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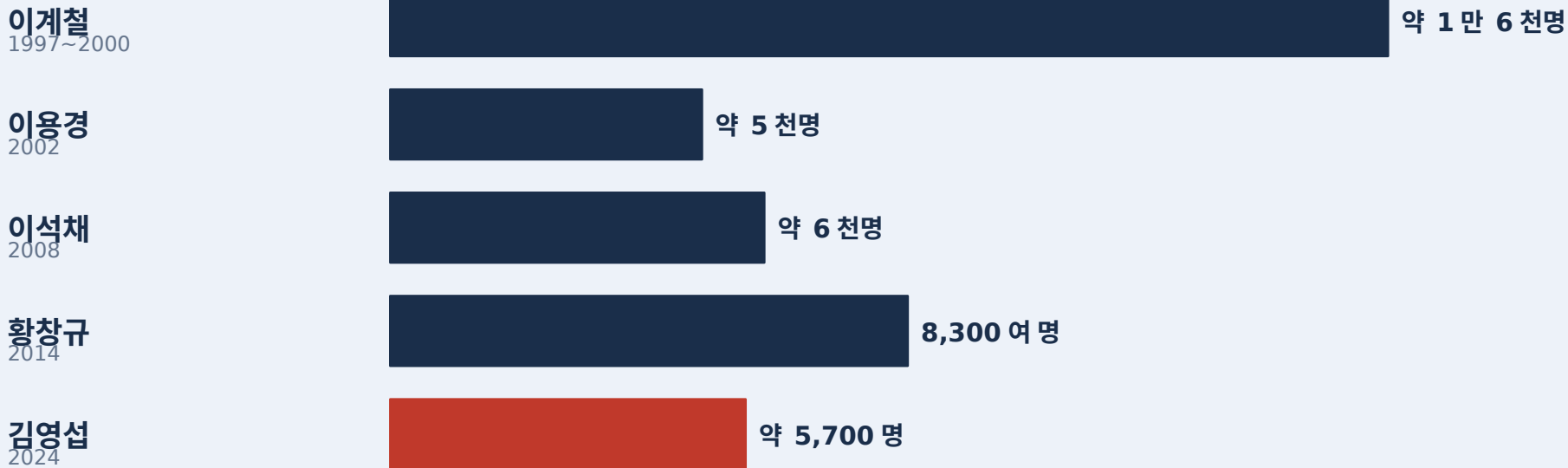
민주노조에서 어용노조로 —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저항 없이 합의해 온 역사

08 1 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대규모 구조조정 연속 합의



08 KT 구조조정의 역사

회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대규모 인력 감축 — 직원 수는 56,600 명(1998) 에서 22,720 명(2020) 으로 반토막



이번 2024 년 구조조정 (빨강) 은 현금성 자산 1.7 조 원 · 영업이익 2 조 원대에도 강행 — KT 새노조는 ' 경영 실패 책임 회피용 구조조정 ' 으로 비판

데이터 출처: 슬로우뉴스 「회장 바뀔 때마다 사람 잘라 이익 늘리기」 (이정환, 2024.10.24) · KT 새노조 「10 년 평가」 (2022) / KT 새노조 재구성

09

조합원 기본 행동강령

우리가 함께 지키는 노동조합 문화

09 조합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



양성평등 실천

성별 · 나이 · 직종에 관계없이 동등하게
대우하며 성차별적 언행을 하지 않는다



상호 존중

동료 조합원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
경청한다. 권위주의 · 위계적 문화를
거부한다



혐오표현 금지

성별 · 나이 · 국적 · 장애에 따른 혐오 ·
비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



민주적 참여

회의 · 투표 ·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,
조합의 결정을 함께 책임지고 실행한다



기밀 보호

교육 · 회의에서 공유된 개인정보와 조합
내부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



연대와 단결

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, 부당한
처우에 함께 맞선다. 노동조합의 힘은
나에게서 나온다

노동조합의 힘은

바로 나 , 우리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 .

— 공공운수노조 노동조합 길라잡이

KT 새노조 (공공운수노조 KT 지부) | humankt.org